

##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 Vol. 1

January 27, 2022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에서는 앞으로 주요 공정거래 관련 규제 동향이나 뉴스를 정리하여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정거래 소식지 2022 Vol. 1 요약**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슈                                                                           | 주요 내용                                                                                                                                                                 |
|------------------------------------------------------------------------------|-----------------------------------------------------------------------------------------------------------------------------------------------------------------------|
| I. 보도자료                                                                      |                                                                                                                                                                       |
| <a href="#"><u>공정위원장, 2022년 신년사 발표</u></a><br>1.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슈)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동향</li><li>• (주요내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22년 신년사를 발표하며, 공정경제 인프라 강화를 위한 공정위의 신년 주요 업무추진방향을 발표</li></ul>             |
| <a href="#"><u>공정위, 2022년도 업무계획 발표</u></a><br>1.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슈)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동향</li><li>• (주요내용)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li></ul>     |
| <a href="#"><u>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 제정안 발표</u></a><br>1.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 제정</li><li>• (주요내용)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음</li></ul> |
| <a href="#"><u>하도급분야 중소기업 단체 간담회 개최</u></a><br>1.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슈) 하도급분야 중소기업 단체 간담회 개최</li><li>• (주요내용)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주요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및 전문건설협회와 실무 협의회를 개최</li></ul>                       |

| 이슈                                                 | 주요 내용                                                                                                                                                                                                                                          |
|----------------------------------------------------|------------------------------------------------------------------------------------------------------------------------------------------------------------------------------------------------------------------------------------------------|
| <b><u>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u></b><br>1.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li> <li>• (주요내용) 공정위는 <b>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b>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li> </ul>                                                                                             |
| <b><u>공정위, 판촉행사가이드라인 1년 연장</u></b><br>1. 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판촉행사가이드라인 1년 연장</li> <li>• (주요내용) 공정위는 2020년 6월부터 운영중인 판촉행사가이드라인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하여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해 납품업자가 재고소진 및 매출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힘</li> </ul>                                           |
| <b><u>공정위, 가맹·유통 분야 업계 간담회 개최</u></b><br>1. 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가맹·유통분야 사건처리방식, 제도 보완사항</li> <li>• (주요내용)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가맹점주 및 유통납품업체 단체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맹·유통 분야의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공정위의 사건처리 방식과 추후 제도 보완사항 등에 관해 논의</li> </ul> |
| <b><u>6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u></b><br>1. 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대리점 분야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동향</li> <li>• (주요내용) 공정위는 <b>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b>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하여 발표함</li> </ul>                                                                             |
| <b><u>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추진 경과</u></b><br>1. 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li> <li>•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li> </ul>                                                                                    |
| <b><u>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와 정책간담회 개최</u></b><br>1.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2022년 공정위 정책방향 설명</li> <li>•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초청으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 관련 협회 및 협동조합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li> </ul>                                                                           |
| <b><u>공정거래조정원, 2022년도 업무계획 발표</u></b><br>1.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공정거래조정원 업무 동향</li> <li>• (주요내용) 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와 공정거래 문화 확산 선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li> </ul>                                                     |

| 이슈                                                                   | 주요 내용                                                                                                                                                                                                                                             |
|----------------------------------------------------------------------|---------------------------------------------------------------------------------------------------------------------------------------------------------------------------------------------------------------------------------------------------|
| II. 주요 소식                                                            |                                                                                                                                                                                                                                                   |
| <p><b>공정위, 기업집단포털 등 내부 시스템 기능 개선 예정</b></p> <p>1. 13.</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내부 시스템 기능 개선</li> <li>• (주요내용) 공정위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 집단이 계열회사의 지분을 사고파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포털 등 내부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였고, 조만간 본격적인 구축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르면 올해 말 시스템 개선이 완료될 것이라고 함</li> </ul> |
| <p><b>공정위, 기업집단포털 개선</b></p> <p>1. 17.</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기업집단포털 개선</li> <li>• (주요내용) 공정위는 (i)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ii) 기업집단포털 접속 시 인증수단을 다양화하며, (iii) 타 기관 데이터와의 연계 기능을 확대하고, (iv) 기록관리 기능을 구축하는 등 기업집단포털을 개선하겠다고 밝힘</li> </ul>                        |
| <p><b>공정위,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 등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정비 예정</b></p> <p>1. 19.</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비</li> <li>• (주요내용) 공정위는 연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 및 ‘이동통신 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li> </ul>                                                                                       |
| III. 국회 발의법안                                                         |                                                                                                                                                                                                                                                   |
| <p><b>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 (서일준 의원안) 국회제출</b></p> <p>1. 14.</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li> <li>• (주요내용) 국회 기재위 서일준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li> </ul>                                                                                                                        |

# 공정거래 소식지 (2022년 Vol. 1)

## I. 보도자료

### 1. 공정위원장, 2022년 신년사 발표 (1. 3.)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월 3일 2022년 신년사를 발표하며, 공정경제 인프라 강화를 위한 공정위의 신년 주요 업무추진방향을 발표
- 공정위원장은 코로나 변이 확산과 그로 인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혁신 성장과 포용적인 시장환경을 이룩하기 위한 공정경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다음과 같이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천명
  - **(디지털 공정경제의 구현)**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하여 스스로를 우대하거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며,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과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온플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조속히 실행할 것임
  - **(갑을관계 상생협력 관련)**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공정거래 협약,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 마련과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여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임. 또한 취약 업종 중심으로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 개선과 불공정행위 감시를 이행할 것임
  -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 흐름을 감안하여 동일인 지정 제도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돌아보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ESG 경영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임
  - **(불공정행위 대응체계 보강)** 사건처리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개선 및 조직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산하 기관 또는 지자체 등과의 적절히 역할 분담할 것임. 또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성립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단을 확충하며, 취약계층의 불공정행위 피해 대응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강화할 계획임

### 2. 공정위, 2022년도 업무계획 발표 (1. 4.)

-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 [업무추진 계획 주요 내용]

#### •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

##### -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집중 모니터링

-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 점검
-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 제도화

- 플랫폼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플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 제정
- M&A를 통한 플랫폼의 지배력 전이·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 추진
- 독과점 빅테크 기업의 경쟁법적 규율 방안에 대한 해외 동향 모니터링 및 국제적 논의 과정 적극 참여

#### –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 집중 감시
-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M&A에 적극 대응 및 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처리
- 창업·공공계약 관련 규제 개선으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 및 CP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자율 준수문화 확산

#### –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

- 온라인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입정보 뿐만 아니라 가입 후 자동수집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도록 온라인쇼핑·게임 표준약관 개정
- 전기차 배터리 부품 보유기간, 이동통신(5G)·초고속인터넷 장애보상 기준 등 디지털·ICT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비

### • 대·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 –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

- 언택트 소비확산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는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 가맹점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

####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조건 개선 및 협상력 강화

- 가맹정보공개서 등록·공개 프로세스 개정
- 대기업집단의 1차 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위한 세부 절차,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방법·절차 마련
-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하는 가맹점주 비율 규정으로 명시

#### -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근절

- 자동차 분야 하도급거래 실태를 점검 및 화학 등 전속거래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감시 강화
- 가맹분야 허위·과장정보제공,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 등을 점검하고 빈발하는 불공정유형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빈발하는 불공정행위와 아울렛·복합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등 점검
- 대리점 분야 업종별 실태조사를 전업종 실태조사로 확대 개편 및 의료기기·의류·자동차판매 분야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
-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 기술유포 익명제보센터 설치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

#### - 지역 현장에서의 갑을문제 대응역량 강화

- 지자체의 분쟁조정 역할을 하도급·유통 분야로 확대
- 공정위-지자체 간 역할분담 운영현황에 대한 전문가·중소기업계·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 검토

### •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 - 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일관성 및 합리성 제고

-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동일인 정의규정 마련 및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합리화 하는 등의 개선방안 마련
- 자금보충약정, TRS 등 계열사 간 채무보증과 유사효과를 가진 금융상품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
-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국세청·금감원 협업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효율화
-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 정비 및 확대

#### - 유용한 정보의 적시 제공을 통해 시장 자율감시 기능 활성화

-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 발굴
-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IT서비스 업종에 대한 내부거래 정보공개를 매출뿐 아니라 매입까지 확대
- 건전한 상표권 거래관행 유도를 위한 상표권 사용거래 정보공개 강화

###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불공정·소비자피해 대응

#### - 방역단계 조정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분야 불공정행위에 선제 대응

- OTA(Online Travel Agency), 숙박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중소 숙박업소·여행업계 대상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 골프장·장례식장·대학기숙사 등의 이용약관 상 일방적 계약해지,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조항을 점검 및 시정

– 팬데믹에 편승한 건강 관련 불공정·소비자이익 침해 행위 차단

- 의료계종사자 대상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행위 점검 및 건강기능식품 부당고객유인 예방을 위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시행
- 수요가 확대되는 위생·건강 관련 제품의 검사 확대 및 바이러스 차단효과 표방제품 등 안전성 미검증 제품 실태조사 추진

•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내실있는 대응 및 피해구제

–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사건처리 방식 개선

- ‘사건업무 개선 TF’ 3개 분과를 운영하여 사건처리를 신속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신속한 분쟁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대체적분쟁해결(ADR) 활성화

- 하도급 대금 분쟁에 있어 조정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 절차 도입
- 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야별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회 설치

– 취약계층 스스로 불공정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

- 가맹분야에서 고충상담, 분쟁해결, 피해예방 교육, 소송지원 등을 수행중인 ‘가맹종합지원센터’를 다른 갑을분야로 확대 추진
-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등 민사적 구제장치를 유통3법으로 확대

### 3.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 제정안 발표(1. 6.)

-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음
- 이번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i) 시장획정, (ii)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iii)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의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제정 내용]

• 적용 범위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적용
- 기존의 법 집행 기준을 배제하거나 이에 우선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해석적 사항을 보완적으로 규정

-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심사지침 적용

## •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

-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으로 (i) 교차 네트워크 효과, (ii) 규모의 경제, (iii) 데이터의 중요성 등을 명시하는 동시에 (i) 스펀 효과, (ii) 효율성 증대 효과, (iii) 독과점적 구조 고착화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

## • 위법성 판단 시 고려사항

### - 시장획정

- **(다면 시장)**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면을 여러 개의 시장으로 구분하여 획정할지, 각 면을 포괄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
- **(무료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생한다면 관련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는 점 명시
- **(동태적 특성)**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간 융합 추세, 급격한 시장변화로 시장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시장획정의 엄밀성보다 경쟁제한의 폐해에 중점을 두고 위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 - 시장지배력 평가

- **(교차 네트워크 효과 등)**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 여부 고려
- **(문지기로서 영향력)** 다수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요 이용자 집단에 대해 접근성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고려
- **(데이터의 수집·보유·활용)** 각 사업자들의 데이터 수집·보유·활용능력 및 그 격차, 경쟁사업자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고려
-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현존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발전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
-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 기준)** 무료 서비스 등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 수, 이용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

### - 경쟁제한성 평가

- **(가격·산출량 외의 변화)** 서비스 다양성 감소, 품질 저하 및 이용자 비용 상승, 혁신저해 우려 등 가격·산출량 이외의 경쟁제한효과도 고려
- **(상품·서비스 간 연계효과)** 현재 지배력을 보유한 시장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다른 상품·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도 고려
- **(혁신에 미치는 효과)** 혁신 촉진, 소비자 후생 증진효과와 혁신 저해, 소비자 후생 감소 효과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고려

## •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으로 (i)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ii) 최혜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요구, (iii)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iv) 끼워팔기를 규정



- 유형별로 공정거래법상 적용 가능한 조항과 위법성 판단 시 고려요소를 구체화하고, 실제 공정거래법 적용 사건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

#### 4. 하도급분야 중소기업 단체 간담회 개최 (1. 7.)

-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주요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및 전문건설협회와 실무 협의회를 개최
- 간담회에서는 (i) 대금미지급 건 신속 구제를 위한 시정조치, 분쟁조정, 동의의결\* 등의 효율적 활용, (ii) 원자재 가격 상승시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의 활성화, (iii) 최근 법개정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시적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상향식 제·개정 방식\*\*이 도입된 것 관련 거래관행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과 개정이 필요한 개별조항 검토, (iv)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관련 제조·유통 분야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서의 중소기업중앙회의 역할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함
- \* 피조사인 하도급업체의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적절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 없이 시정방안과 같은 의결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로 '21. 12월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 \*\* 관련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검토 후 승인하는 방식
-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올해의 하도급 분야 중점 과제들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사건업무 개선 TF 3개 분과\*를 운영하여 하도급분야를 포함한 사건처리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 \* [업무개선 분과] 사건업무실태점검 및 사건조사·관리·시스템 전반 개선, [조직개편 분과] 성과평가·교육·조직·인력 등 개편, [업무조정 분과] 지자체·산하기관 등 협업 강화

#### 5.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1. 10.)

-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
-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i)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ii)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품목, 판매가격 등에 대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iii)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해 가맹점이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 (iv) 가맹점주가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v) 가맹본부가 10년 이상 운영된 장기점포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

#### 6. 공정위, 판촉행사가이드라인 1년 연장 (1. 13.)

- 공정위는 2020년 6월부터 운영중인 판촉행사가이드라인\*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하여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해 납품업자가 재고소진 및 매출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힘
-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
-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부칙에 있는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고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요 개정 내용]

### • 판촉행사가이드라인

- 현행 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차별화된 행사’에 있어서는 판촉비용 50% 부담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
- 판촉행사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행사참여여부, 품목, 할인을 등 판촉행사 관련 핵심요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경우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행사로 보아 유통업체의 판촉비용 50% 이상 부담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

### • 특약매입 심사지침,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

#### - 개정 배경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판촉행사가이드라인 기한 연장을 요청,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

#### - 개정 내용

- 특약매입 심사지침,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부칙에서 판촉행사가이드라인의 적용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

## 7. 공정위, 가맹·유통 분야 업계 간담회 개최 (1. 14.)

-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가맹점주 및 유통납품업체 단체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맹·유통 분야의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공정위의 사건처리방식과 추후 제도 보완사항 등에 관해 논의
- 공정위는 가맹분야와 관련하여 (i)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맹점주의 비율을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고, (ii)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iii) 점주단체 활동을 한 가맹점주에 대해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고, 유통분야와 관련하여 (i) 온라인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ii)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힘

## 8. 6개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 (1. 18.)

- 공정위는 지난 1월 18일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대리점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급업자·대리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발표함
- 제정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는 합리적 거래조건의 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 관행의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6개 업종 공통)** (i)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시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 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감면 조항 규정, (ii) 대리점에 공급업자의 온라인판매 관련 정보제공 요청권 부여, (iii) 대리점에 4년 범위 내 계약갱신

요청권 부여

- **(기계 업종)**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품 하자에 따른 애프터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공급업자가 수행하되, 대리점에 위탁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
- **(화장품 업종)** 방문판매 형태의 유통방식이 활용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하고, 공급업자가 방문판매원을 지원하는 경우 대리점과 협의토록 규정

## 9.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추진 경과 (1. 19.)

-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  
\*정부는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갈등이 심각한 현장에 대해 지역별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관계자 면담 등 불법행위 파악 및 정보공유, TF 합동 점검, 관계법 적극 적용으로 대처
- 공정위는 담당인력 보강, 지방사무소 간 협업 등 신속한 제재조치를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짐
- 국무조정실 윤창렬 제1차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에 있어 지속적인 관계부처(고용·국토부, 공정위, 경찰청)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임을 밝힘

## 10.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1. 20.)

-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초청으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 관련 협회 및 협동조합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
-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책간담회에서 (i)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ii)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추진, (iii)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 마련, (iv) 자동차 분야 하도급 실태 점검, (v) 온라인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집중 감시 등 2022년 공정거래정책 방향 설명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11. 공정거래조정원, 2022년도 업무계획 발표 (1. 20.)

- 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와 공정거래 문화 확산 선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 [업무 계획 주요 내용]

- **분쟁조정 내실화를 통한 피해구제 기능 강화**
  - 상임위원 제도의 도입, 하도급 분쟁 조정사건에 감정평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제도 개선·내실화
  - 업종별·유형별 분쟁 사례 분석 및 빈발 분쟁 유형 관리
  - 교육프로그램, 업무경험 공유를 통한 조정역량 강화

- **공정거래 종합지원 활동으로 영세사업자 고충 해소**

-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공정거래 교육 실시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 컨설팅, 법률지원, 홍보 확대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신설 추진
- 온라인 공정거래 교육플랫폼 구축 및 공정거래 교육 대상 확대

- **상생과 협력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

-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설명회, 간담회 개최 및 사전교육 강화
- CP등급평가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침 보완, 정량평가 요소 강화 등 규정 정비
-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내실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교육 강화

- **공정거래진흥원으로서의 개편 추진**

- 진흥원 개편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강화
-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활성화, 이행관리 대상을 시정조치로 확대 추진
-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 행위 예방을 위한 기업체 컨설팅 추진
-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 통과 대비 분쟁조정 업무 사전 준비

- **제도 선진화·법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강화**

- 분쟁조정통합법률(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 공정위 시정조치(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사건 시장구조 비교·분석
- 주요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실시
- 연구기능 성과 확산을 위한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배포 등 대외협력 강화

## II. 주요 소식

### 1. 공정위, 기업집단포털 등 내부 시스템 기능 개선 예정 (1. 13.)

-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 집단이 계열회사의 지분을 사고파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포털 등 내부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였고, 조만간 본격적인 구축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르면 올해 말 시스템 개선이 완료될 것이라고 함
  - 현재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공시대상기업 집단의 회사들은 계열회사 주식을 매수 또는 매각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 '다트(DART)'에 공시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위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를 수집하려 함
- 아울러,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 사익 편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를 하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다만 지분 변동 현황 점검 주기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

### 2. 공정위, 기업집단포털 개선 (1. 17.)

- 공정위는 (i)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ii) 기업집단포털 접속 시 인증수단을 다양화하며, (iii) 타 기관 데이터와의 연계 기능을 확대하고, (iv) 기록관리 기능을 구축하는 등 기업집단포털을 개선하겠다고 밝힘
  - \*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해외계열사 공시점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등 관련법은 개정됐지만 이에 따른 관리 기능 부재
- 공정위는 이번 개선을 통해 대기업집단 관리의 업무 효율이 증가하고 각 기업 담당자의 개정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 준수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기업집단 정책을 수행하는 중요 데이터셋에 대한 보존 및 처분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힘

### 3. 공정위,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비 예정 (1. 19.)

- 공정위는 연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 및 '이동통신 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권고 기준으로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적용됨
- 현재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3시간 이상 또는 월 누적 12시간을 초과해 서비스 중지나 장애로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정위는 이 같은 기준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시점이 각각 2011년, 2018년으로, 현재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비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III. 국회 발의법안

#### 1.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서일준 의원안) 국회제출 (1. 14.)

- 국회 기재위 소속 서일준 의원은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주체, 자료제출 및 공유 요구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가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안 제27조 등)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